

「고등교육」 발간지침

2017. 11. 02. 제정

2018. 03. 19. 개정

2019. 07. 03.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지 「고등교육(Journal of Higher Educational Research)」(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학술지 발행 목적) 학술지는 고등교육에 대한 학문적 연구 및 정책에 대한 현안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 횟수 및 시기) 학술지의 발행 횟수는 연간 2회로 하고, 그 시기는 매년 6월 30일(1호), 12월 31일(2호)로 한다. (개정 2018. 3. 19.)

제4조(게재 논문 주제)

- ① 고등교육의 과제에 대한 학술적 분석, 진단 및 평가
- ② 고등교육의 정책에 대한 논리적 또는 경험적 관점, 주장 및 비평 (개정 2018. 3. 19.)
- ③ 기타 고등교육과 관련된 주제로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정한 주제

제5조(논문 투고자격)

투고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교육기관, 교육행정 기관, 연구기관에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석사이상의 학위소지자로 한다. (개정 2019. 7. 3.)

제6조(편집위원회)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7조(편집위원회 기능)

- ① 학술지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게재 판정, 편집, 발간과 관련한 추진 사항 (개정 2018. 3. 19.)
- ②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자의 추천 및 선정
- ③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
- ④ 게재 논문의 편수, 게재 순서의 결정
- ⑤ 기타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한 외부 인사 13명 내외(당연직 1명 포함), 1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9.)

② 편집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교수 및 박사, 또는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투고 방법)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작성은 학술지 원고 작성 양식(「고등교육」 투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작성된 원고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송부해야 한다. 단,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0조(게재원칙) 학술지 게재는 미발표 연구논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저작권의 양도)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귀속된다. (개정 2018. 3. 19.)

제1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